

서울고등법원 2023. 12. 13 선고 2023나202387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 2023. 12. 13 선고 2023나2023874 판결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3. 5. 11 선고 2022가합30051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

피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치앤케이 담당변호사 한상규

변론종결 2023. 11. 22.

판결선고 2023. 12. 13.

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. 5. 11. 선고 2022가합30051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5. 19.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226,957,19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226,957,19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‘2. 추가판단’을 기재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- 5면 5행의 “피보전채권액”을 “피담보채권액”으로 고친다.
- 10면 9행의 “원고로부터”를 “B로부터”로 고친다.
- 11면 16행의 “부부 관계였던 점,”을 “부부 관계였던 점, C에 대한 감사의견 ‘의견거절’로 공시된 때로부터 5일 후에 열린 조정기일에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 체결된 점,”으로 고친다.

2. 추가판단

가. 피고의 주장

1) B은 C의 주식 7,173,000주를 보유하고 있던 중 2020. 5. 20. 위 주식 250,000주를 1주당 2,000원, 2020. 5. 25. 위 주식 4,000,000주를 1주당 1,500원에 각 매도하였다. 이에 의하면 B이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당시인 2020. 5. 19.경 보유하고 있던 C 주식 가액의 합계는 10,759,500,000원(=

7,173,000주 × 1,500원) 내지 14,346,000,000원(= 7,173,000주 × 2,000원)에 달하므로, B이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.

2) 위 C 주식의 가액을 고려할 때,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에 의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.

나. 판단

1)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재산은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(대법원 2006. 10. 26. 선고 2005다76753 판결, 대법원 2001. 10. 12.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).

2)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이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당시 C 주식 7,173,000주를 보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. 그러나 앞서 본 사실, 앞서 든 증거, 갑 제17, 18호증,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, 즉 ① C는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체결 직전인 2020. 5. 14. 2019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‘의견거절’로 공시되었고, 이로 인하여 W 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점, ② 더욱이 2019년도 재무상태표상에는 C가 42억 원 상당의 단기금융상품 및 약 71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, 실제로는 C가 D은행에 대한 9억 6,0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하기에 이른 점, ③ 피고는 C의 ‘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’(을 제14호증)를 제출하면서 B이 C 주식 4,250,000주를 1주당 2,000원 내지 1,500원으로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, 그에 따른 주식 양도대금이 B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, 위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B은 상당 부분의 주식대금을 다른 주식회사의 신주로 지급받거나(2020. 5. 20.자 250,000주), 주식양수인에 대한 채무변제로 갈음할 예정이라고(2020. 9. 25.자 2,800,000주)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, 피고 주장의 주식거래가 실재하였고 나아가 위 보고서상의 주식대금이 주식의 실제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, C의 주식이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당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.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3. 결론

제1심판결은 정당하다.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유경, 판사 배용준, 판사 황승태

별지